

국가자격검정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인정 신분증은 아래와 같음

가. 규정 신분증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③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 ④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신분증 포함)
- ⑤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 ⑥ 국가유공자증
- ⑦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나.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제약이 있는 사함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

- ①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 ② 재학증명서(NIEC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 ③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등 >

- ①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임시신분증 발급은 우리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 ①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다. 상기 규정·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

- ①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본 변경기준은 2018. 8. 19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사항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9년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안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공학용계산기 저장기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19. 1. 1.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사용 가능한 공학용계산기가 아래와 같이 저장기능이 없는 일부 기종으로 제한되오니,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9. 1. 1.부터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시험 전 종목(등급) 수험자
- 주요내용 : 공학용계산기는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 연번 | 제조사 | 허용기종군 | 비고 |
|----|-------------|--------------|----|
| 1 | 카시오 (CASIO) | FX-901 ~ 999 | |
| 2 | 카시오 (CASIO) | FX-501 ~ 599 | |
| 3 | 카시오 (CASIO) | FX-301 ~ 399 | |
| 4 | 카시오 (CASIO) | FX-80 ~ 120 | |
| 5 | 샤프 (SHARP) | EL-501 ~ 599 | |

※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등)은 무관하나 SD라고 표기된 경우 외장메모리가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연이은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통신기기 관리를 강화·운영함을 안내·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사례)

①휴대폰, ②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테이블릿, ④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MP3 플레이어, ⑥디지털카메라, ⑦카메라 펜, ⑧전자사전, ⑨라디오,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1)신분증, (2)수험표, (3)필기구, (4)수정 테이프, (5)아날로그시계, (6)전자계산기, (7)우리 공단에서 지정된 수험자지참공구, (8)간식” 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8. 7.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사항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 11. 10 이후 시행시험부터 적용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